

부산고등법원 2021. 6. 17 선고 2020나55087 판결 [점유회수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국제

담당변호사 박도건

피고, 항소인 1. B

2. C 주식회사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

변 론 종 결 2021. 5. 13.

판 결 선 고 2021. 6. 17.

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. 8. 12. 선고 2019가합45940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8항 기재 건물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3. 소송 총비용 중 1/10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 및 2. 당사자들의 주장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3면 제9, 10행의 사.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(그 말미의 각주 1은 삭제한다), ② [인정 근거]로서 제3면 제12행의 ‘을 제16, 17호증’의 뒤에 ‘을 제27호증’을 추가하며, ③ 제4면 제19, 20행의 “별지 부동산 목록 제8항 기재 건물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대지 위에 있는 사실”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‘1. 기초사실 및 2. 당사자들의 주장’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사.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8항 기재 건물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은 2012. 7. 9.경 철거되어 그 무렵 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되었다(이하에서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지칭할 때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‘이 사건 건물’을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).

3. 판단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7면 제15행과, ② 제8행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‘3. 판단’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[위 ① 관련 추가 사항]

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28호증, 제29호증의 1,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,

D이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독자적 · 전면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.

[위 ② 관련 추가 사항]

라.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작할 무렵에 이미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지 않아서 애당초 원고가 이를 점유한 사실이 없고, 피고들이 이를 침탈한 사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,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.

마. 소결

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 반면,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들이 이를 침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회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

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,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준용, 판사 최 환, 판사 최희영

[별지]

부동산 목록

- | | | |
|--------------|--|--------|
| 1. 부산광역시 연제구 |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80px; height: 120px;"></div> | 대 353㎡ |
| 2. 부산광역시 연제구 | | 대 172㎡ |
| 3. 부산광역시 연제구 | | 대 192㎡ |
| 4. 부산광역시 연제구 | | 대 169㎡ |
| 5. 부산광역시 연제구 | | 대 50㎡ |
| 6. 부산광역시 연제구 | | 대 19㎡ |
| 7. 부산광역시 연제구 | | 구거 46㎡ |

8. (건물의 표시)

부산광역시 연제구

[도로명주소]

부산광역시 연제구 조표

보목크조 스라브가 2층 주택

1층 42.98㎡

2층 23.14㎡. 끝.